2026년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감사실)

2026년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6. 9. 7. ~ 9. 18. (10일간)

* 사전 자료조사(과제 발굴): 2026. 8. 31. ~ 9. 4. (5일간)

○ 감사범위: 2024. 9. 1.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서해구) 감사반장, 감사반원 13명
- (검단구) 감사반원 11명

※ 감사반은 서해구 감사실을 주관으로 하되, 검단구 감사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공동감사반으로 편성・운영

○ 감사방법: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Ⅱ. 감사 결과

○ 이번 종합감사는 공단의 조직・인사・복무관리, 예산・회계 및 계약업무, 주요 사업 운영과 시설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4. 9월부터 ’ 26. 8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음.

○ 감사결과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경미한 사항 1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완료함.

○ 총괄표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문책	훈계·주의	기관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조치
총건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시정	재정상 시정 (건/금액)					
50	425	-	-	-	-	5	4/425	30	8	2	-	1

[일련번호: 26-97]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인사 원칙의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Ⅲ. 직원의 인사 ⑦ 보직 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소속 직원에 대한 전보·승진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 내부행정망 등에 인사 운영 및 방향·기준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저해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98]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가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 따라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7조(근무성적평가조정위원회의 등 설치)에 따르면 본부 내 직급별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근평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해당 본부별 근무성적평가소위원회(이하 “근평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해당 본부장과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27조의2(근무성적평가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서식으로 부서 내 직급별 등급을 작성하여 해당본부 근평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평소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부서별 등급을 참고하여 관련 서식으로 본부 내 직급별 등급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근평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근평소위원회의 역할은 근평조정위원회 이전 본부 내 직급별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기구로써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2025년도 하반기 경영지원본부의 근평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작성한 근무성적평가표에 평가위원의 서명을 전원 누락하여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으로 인사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99]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Ⅱ. 임원의 인사 3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바.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청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고 구성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25년 제3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정 성별 위원 비율이 80%를 초과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0]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개선 요구

제　　목　**임원 징계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임원과 직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제19조(문책의 종류) 및 제22조(문책양정기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Ⅳ. 투명한 윤리경영 ⑵ 징계양정 등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고,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하며,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임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임원에 징계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개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임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수단을 다양화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규정」 제15조(시정요구 등)에 따르면,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 후 해당 부서장에게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4조(직원의 징계)에 따르면, 이사장이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내규 제47조(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 관련 사항과 징계양정기준을 검토하여 요구양정을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명확하게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 및 처분수위는 인사위원회에

서 징계혐의자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단의 징계의결 요구현황을 확인한 결과,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요구양정을 경징계 또는 중징계 중 하나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요구양정에 감봉·정직·해임·파면 등 구체적인 징계까지 함께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의결 요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2]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부서장 보직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16조(보직과 정원)에 따르면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으나, 이사장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제3조(직제의 개편)에 따르면 공단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은 이사장이 이를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정원)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3조(기구 및 정원)는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사유 없이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시행내규」의 「별표1 정원표」직급에 부합하지 않게 부서장을 배치하였다.

[표] 정원표 직급에 맞지 않는 부서장 보직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1. 「공단 직제규정」 제10조(직위)에서는 부서(실·단·부)장 직위를 3~5급의 일반직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단장과 부장의 직급은 구분하고 있지 않다.’, ‘2. 「공단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3조(기구 및 정원)에서 정하는 사업장·직렬·직급별 정원은 조직차원에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분배이고 부서장의 직급을 정한 것이 아니다.’, ‘3. 공단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직의 관리, 사업운영의 내실화, 경영목표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규정에 의거하여 보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제규정 등의 변경이 선행된 후 보직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3]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내규」제7조(공무국외출장 사전협의) 및 제8조(심사요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 미리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출장 30일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에 따르면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와 수집된 자료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표]와 같이 공무국외출장을 심사 하면서 심사의뢰 및 결과보고 일정을 지연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지연 현황(2024~2025)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4]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병가 사용 및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32조(병가)에 따르면, 임・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 병원 이상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7일 미만인 경우에는 2차 병원 이상의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르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연간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 초과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등 병가 및 연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가 사용 및 증빙서류 제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병가 사용일의 진료 여부 등 병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받아 병가를 승인하였으며, [표2]와 같이 연간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병가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6일 초과 병가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병가 증빙서류 부적정 제출 현황 “생략”

[표2] 연 6일 초과 병가 증빙서류 미비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부적정하게 승인한 병가를 연가로 전환하시고, 잔여연가 차감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5]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개선 요구

제　　목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일수 산정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37조에 따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직원이 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개별 휴가신청 건만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휴가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산정·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직원들이 휴가를 실제 출근 없이 30일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1주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나누어 신청한 개별 휴가신청 건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로는 30일 이상 휴가가 계속되었음에도 시스템상 산정된 휴가일수가 실제 계속된 휴가기간보다 적게 관리되는 등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에 대한 휴가일수 산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의 휴가일수 산정 부적정 현황 "생략"

한편, 현행 규정 제37조는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가 종류별 적용기준, 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의 합산기준 및 병가·연가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토요일·공휴일 산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휴가일수 산정 및 관리에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에서는 같은 연도 내 일반병가 및 공무상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휴가 종류별 적용기준과 합산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향후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일수를 적정하게 산정·관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휴가 종류별 토요일·공휴일 산입기준, 분할 사용 시 합산기준 및 서로 다른 종류의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휴가일수 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에 대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산정한 휴가일수를 재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휴가 종류별 토요일·공휴일 산입기준,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합산기준 및 서로 다른 종류의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휴가일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6]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및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2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휴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반기별 휴직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내규 제73조에 따르면 해당 휴직 중인 직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반기말일(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복무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휴직자의 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기별로 휴직실태를 점검하고,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보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휴직자의 복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휴직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면서, 2024년 및 2025년에는 각각 하반기에만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7]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공가 사용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31조(공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화재・수해 기타 재해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가할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정」 제31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가 승인 시에는 신청 사유가 공가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인 2024. 9월부터 현재까지의 공가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취업규정」 제31조에서 정한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공가로 승인・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자녀 입대 참석 휴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30조(특별유급휴가)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특별휴가에 해당하나, 휴가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휴가 구분을 ‘공가’로 잘못 선택하여 처리한 사항이며 규정상 인정되지 않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부적정하게 승인한 공가를 적정한 복무 전환 및 차감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8]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공단 임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상근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겸직 개시일 이전에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겸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겸직 개시일인 2025. 1. 7. 당일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이 겸직 개시 다음날인 2025. 1. 8.에 완료됨에 따라 개시 당일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겸직 업무를 수행하여 사전 허가 절차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표] 겸직허가 신청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09]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개선 요구

제　　목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미흡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르면,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소극행정 상습·악성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임직원 및 이용자가 소극행정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센터의 정상적인 접속 및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등 신고창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공단 홈페이지의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메뉴(링크)가 게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링크를 통한 신고센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공단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도록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게시하고 있음에도, 신고센터의 정상적인 접속 및 이용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신고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정상적인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고창구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신고센터가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0]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외부강의등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기고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강령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및 제출)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의 「외부강의등 신고업무 처리 방침」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채용과정의 서류전형위원회·채용면접위원·시험감독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각 활동의 내용

및 형태 등을 확인하여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외부강의등으로 분류하여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를 근거로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부강의등 준수 여부 점검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외부강의등으로 분류하여 신고 여부 및 신고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준수하지 않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두)주의 조치를 하는 등 외부강의등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외부강의 등 분류 및 조치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개선 요구

제　　목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 처리 및 제외기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감사부서의 장은 공단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해당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추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제조, 공사 및 용역은 일상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결재를 받기 이전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별표에서는 일상감사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사전에 감사실의 협의를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계약업무가 위 시행내규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며, 일상감사 제외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단에서 추진한 ▨▨▨▨▨▨▨▨, ▤▤▤▤▤▤▤▤ 및 ▧▧▧▧▧▧▧▧의 경로식당 주·부식 식자재 구매계약이 위 시행내규 별표 2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함에도, 일부 계약에 대하여 서해구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등의 사유로 공단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단 ◎◎실에서는 위 식자재 구매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전에 ◎◎실과 협의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현행 시행내규에서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는 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행내규 별표 2에서 일상감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에 감사실의 협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방법·절차, 제외 여부의 결정권자 및 협의 결과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일상감사 제외 대상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개선]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준수하고, 일상감사 제외 대상의 적용기준 및 사전 협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2]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 ◎◎◎◎◎◎◎◎, ○○○○○○○, ▦▦▦▦▦▦▦▦

내　　용

1. 사회복지시설 기타운영비 집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시설회계는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매뉴얼」 예산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직원 연수 및 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및 강의료 등의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해당 지출의 성격과 예산비목별 집행기준을 확인하여 적정한 세출예산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 ▨▨▨▨▨▨▨과 ▧▧▧▧▧▧▧▧에서는 2025년 사업평가회 연찬회비를 집행하면서 해당 경비를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과목을 착오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기타운영비 부적정 집행 현황 “생략”

2. 행사운영비 집행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Ⅶ. 예산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 적용))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및 교통비(실비)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석을 위한 실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 산하 ♣♣♣♣♣에서는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대표자 등의 참가비를 지원함에 있어 [표]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행사운영비 부적정 사용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청소년포상제 탐험활동 참가비 지원 과정에서 세출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지출 전 적정 예산과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소속 청소년이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3]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예수금 관리계좌 발생이자 수입처리 소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분임징수관은 수입원 발생 시마다 징수결의서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본부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수금 관리계좌에 예금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징수결의 및 수입결의 절차를 거쳐 이자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26년 6월 예수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결의 및 수입결의 등 수입처리를 하지 않고 해당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예수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수입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 예수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결의 및 수입결의 등 적정한 수입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4]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개선 요구

제　　목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194조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용역의 도급 등이 필요한 경우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서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은 재무관 명의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외부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관련 회계규정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적정성 및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동일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분기별로 지급하였음에도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급수수료로 집행하였다.

또한 익명신고시스템 이용료가 최초 운영 당시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비용 증가에 따른 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및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스템 운영기간 동안 신고·이용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운영성과 및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없이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채널 등 기존 외부 신고수단이 있음에도 기존 신고수단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별도의 익명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는 등,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련 계약·예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연도별 집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정량적 이용률은 높지 않으나,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조직 내 비위행위 차단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독립된 외부망 익명신고 플랫폼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조직 내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채널은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반면, 자체 외부 전문 플랫폼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완벽히 유지하면서 감사부서와 제보자간 즉각적인 1:1 추가 증거 확보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과 2027~202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안)의 윤리경영 평가 항목에 '사내전산망과 분리된 외부망을 활용한 익명신고 플랫폼 운영' 기준이 신설될 예정으로 외부 전문 플랫폼의 운영을 권장, 평가하는 조치이므로 본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립된 외부망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및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는 등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계약·예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익명신고시스템의 이용료 적정성, 운영실적 및 실효성, 기존 신고채널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계약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5]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관련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사용범위와 집행절차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해당 경비가 이사장 업무추진비의 편성목적 및 사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공단은 2025. 12. 4. 12:00 및 2026. 2. 4. 12:00 이사장 참석 행사와 이사장 불참 행사에 대하여 각각 내부결재를 한 후, 실제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식사 비용을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그 편성목적 및 사용범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6]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자금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1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매분기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자금운용 상황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분기별 보고 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7]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근조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소속 임직원의 부고 발생 시 조의를 표하고자 이사장 명의로 된 근조기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단 근조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근조기 제작업체의 배송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194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서의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소속 임직원의 부고 발생 시 조의를 표하고자 근조기를 배송하는 업무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공단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8]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제2호 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2.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3.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그러나 공단 산하 ◇◇◇◇◇◇에서는 2025. 9. 12. 신용카드 사용건인 '◇◇◇◇◇◇ 업무 연찬회비 지출' 에 대하여 사용 전 품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5. 9. 15.에 품의를 하여 부적정하게 신용카드 지출을 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19]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후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2.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한다.
3.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 · 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4.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그러나 공단은 아래 [표]와 같이 2025년 11월과 12월분 급식비 중 일부 거래처(식당)에 대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1개월을 초과하여 합산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후 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표] 현금영수증카드사용 부적정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0]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서류 작성 및 계약이행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지방공기업」제76조제2항 및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검사), 제67조(대가의 지급)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등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해당 확인서에는 발주 내용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수의계약 사유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일부 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계약 관리 서류 누락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모든 수의계약에 대하여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류 제출 부담과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공단에서는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계약에 한하여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나 일상감사 대상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확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계약 시 환경보전비 계상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계약·시행하는 경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훼손의 최소화 등에 필요한 환경보전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별표 1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공사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에서는 2024. 9. 1.부터 2026. 7. 31.까지 계약·시행한 건설공사 중 붙임과 같이 총 30건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

[표] 환경보전비 미계상 건설공사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2]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권고 요구

제　　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검토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및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단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및 제67조(대가의 지급)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9절 제9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9. 관계부처합동) 대상 계약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24. 9. 1. ~ 2026. 7. 31.) 중 체결한 입찰 용역 계약에 대해 전자입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청구서, 지방세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만 확인하고 과업 내용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적용 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권고] 용역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기성대가 지급 전 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3]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서해구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따르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정의)에 따르면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공단 감사대상기간(2024. 9. 1. ~ 2026. 7. 31.) 내에 체결한 계약심사 의뢰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 공연장 메인 스피커 구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계약심사 미의뢰 내역 “생략”

위와 같이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 및 설계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4]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라 한다)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세부목과 그 물량은 규격서·설계서 또는 원가계산 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각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예정가격조서에 그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표준품셈에서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

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하게 되어 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재료비)에 따르면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 공구손료는 간접재료비에 해당한다.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14일 이내에 검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공단 감사대상기간(2024. 9. 1. ~ 2026. 7. 31.) 내에 체결한 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내역서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 혁신제품 시범구매 설치공사' 에 대하여 공구손료를 재료비가 아닌 노무비로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5년도 ▨▨▨▨▨수경시설 보수공사' 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잡자재비를 반영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단가·수량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2026년도 ▨▨▨▨▨ 환경개선 공사' 의 경우 원가계산서에 폐기물처리비를 반영하면서도 해당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단가·수량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폐기물처리 공종을 최종 계약내역서 및 준공내역서에는 반영하지 않는 등 공사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5]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경비(보험료) 요율 계산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등 [별표] 기재 8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석면분담금, 기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미리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의 경우 석면분담금을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에 따르면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계상기준

구 분	부과대상	계상기준
석면분담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단, 건설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보수총액 × 0.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	보수총액 × 0.09%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비율)

그런데 공단이 2026. 3. 13. 이후 발주한 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내역서를 점검한 결과 [표2]와 같이 ‘2026년도 ◇◇◇◇◇◇ 전기시설물 개선’ 등 13건에 대하여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미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2] 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소관기관 및 조치기관 현황

연번	부서명	연번	부서명
1	◇◇◇◇◇	5	□□□□□
2	△△△△△△△	6	▦▦▦▦▦▦▦
3	●●●●●●●	7	▲▲▲▲▲
4	▼▼▼▼▼▼▼	8	♤♤♤♤♤♤

[일련번호: 26-126]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운영수입 징수결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 ◇◇◇◇◇◇

내　　용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에서는 수영장 및 체육관, 헬스장,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발생시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징수 결의하여 수입으로 결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16조(증거서류의 범위)에 따르면 증빙서류를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고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의서 등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부속서류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의 수영장 카드 수입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다수의 거래 건을 합산하여 징수결의하면서도 해당 총액을 구성하는 거래별 이용내역 및 결제금액, 카드사 정산내역 등 세부자료를 징수결의서에 첨부하지 않아 총 입금액만 확인되어 징수결의 금액의 산출근거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증빙자료를 구비·관리하지 않아 관련 회계규정에서 정한 증빙자료 관리 및 회계처리 원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운영수입 징수결의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127]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견인보관소 보관료 징수 부적정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기 관 **▲▲▲▲▲**

내　　용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1,000원, 30분 이후 15분마다 500원을 적용하되 최고 12시간까지 적용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주차권 요금 10,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견인차량의 보관료를 징수할 때 차량별 보관시간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요금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보관료를 산정·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 산하 **▲▲▲▲▲**에서는 2024. 9. 1.부터 2026. 7. 31.까지 견인차량 보관료를 징수하면서 보관시간에 따른 요금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총 127건, **,***원의 보관료를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견인차량 보관료 과소징수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견인 보관 시스템 업체에 금액산정 시간과 출고시간이 일치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을 하였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8]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감봉 처분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 평가급(자체・인센티브),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보수의 감액)제2항에 따르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되,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보수규정」제3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봉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봉 징계처분자의 보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평균

임금을 산정하면서 명절휴가비, 자체평가급, 인센티브평가급, 정근수당 등 일부 평균임금 산정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감봉액을 과소 산정하여 감봉기간 중 보수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감봉 처분자 보수 과다 지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과다 지급한 보수(2건, **,***원)를 환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29]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권고 요구

제　　목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7조(출장지의 구분) 제1항에 따르면 출장지는 인천광역시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2만 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하되, 공단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 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관내출장 여비를 지급할 때 실제 출장시간을 적정하게 산정·관리하고, 출장시간 및 공단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출장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장시간을 실제 출장 시작·종료시각을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분 단위로 기록하는 등 실제 출장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공단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은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여비지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출장건에 대해 이전 특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어 소명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7조(출장지의 구분) 제2항에 따른 공단 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규정과 관련하여, 출장 목적이나 이동 수단에 따른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고, 관용차량 사용 사실이 명백하여 임의적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전 특정감사에서 이미 환수된 내역(출장자 ♧♧♧, 1건)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정]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16건, ***,***원)를 환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출장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장시간을 실제 출장 시작·종료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0]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업무대행수당 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는 30일 이상, 공무상 질병휴직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 직원과 대행하는 업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 및 급여담당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6호에서는 업무대행수당을 지정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업무대행 대상 직원의 휴가・휴직 사유 및 기간 등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 기간에 한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면서, 업무대행 대상자인 ☆☆☆이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업무대행수당 지급기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업무대행수당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업무대행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대행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업무대행수당 ***,***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에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6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아래 [표]와 같이 소모품 사용내역 누락, 합계 오류, 결재 누락 등 대장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소모품대장 관리 부적정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2]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불용물품 처분 시 일상감사 미실시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감사부서의 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체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2조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는 ‘물품의 처분 전체’를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불용물품의 매각·폐기 등 물품의 처분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처분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불용물품 총 1,140점에 대하여 폐기·매각·양여 등의 처분을 실시하면서, 처분에 앞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

전 통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불용물품 처리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물품 처분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 및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3]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피복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피복시행내규」 제5조(지급관리)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피복의 지급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사업장)의 팀(관・센터)장으로 하며, 각 부서(사업장)의 팀(관・센터)장은 피복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피복 지급에 관한 기록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11월 14일(동점퍼 지급 건) ◉◉◉◉◉◉ 피복지급대장 작성 시 수령인 2명에 대하여 서명란에 수령인 서명을 받거나, 미서명 사유(퇴직, 지급 미희망 등)를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 두어 피복 지급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4]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보고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3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차량관리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현황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차량관리부서에서 보험처리 등 사고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 총괄부서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공용차량 사고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5]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소홀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서별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서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위원회는 경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경영계획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주요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사업장 서비스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기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반기 1회 회의 개최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개최할 경우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민참여 소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반기 1회 회의 개최 원칙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총 4회의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중 3회에 대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회의 소집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통지 소홀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6]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시정 요구

제　　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실

내　　용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위원회 관리내규」 제5조(위원회 구성)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직무 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인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임명하였으며, 다수의 위원회에서 위원이 직무 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위원회 중복 위촉·임명 현황 “생략”

2.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구성)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표3]과 같이 임기 만료 후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의 조치 없이 운영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필요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 위원의 임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미충족 현황 “생략”

[표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관리 현황 “생략”

3.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운영규정」제21조(구성)에 따르면,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인권증진 및 윤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력회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인권·윤리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2조(소집 및 회의)에 따르면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외부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재위촉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임기만료 이후 개최

된 인권경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 보고를 하는 등 외부위원의 임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4] 임기 만료 외부위원의 위원회 참여 현황 "생략"

4.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8조(청렴옴부즈만 운영)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정한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구성),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및 제9조(임기 및 신분보장)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2024년 및 2025년도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각각 1회만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위촉된 옴부즈만 5명의 임기가 2026년 7월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지침에서 정한 구성인원에 맞게 청렴옴부즈만을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5]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정] ① 각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 등을 재검토하여 부적정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7]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시설 운영내규」 제32조의2(지원협의회 구성 및 자격)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해당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기관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시설 사무위임전결내규」 제4조(전결사항)에 따르면 각 직위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내규 별표 22-(나)에 따르면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에 따라 위원장을 구성하고, 지원협의회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결재

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공단 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야 함에도 관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원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단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지원협의회 구성 및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구성방법에 따라 위원장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내규를 개정토록 하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① 변경된 상위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운영내규도 함께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8]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주의 요구

제　　목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안의 보고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실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2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감독기관인 서해구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분야에서는 구와 공단의 긴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2026년 8월 24일 □□□□□□□□ 수영시설 안전사고의 건, 2026년 9월 8일 ◑◑◑◑◑◑◑◑◑ 수영시설 안전사고의 건에 대하여 본부에서 서해구 총괄부서로의 보고가 익일에야 이뤄지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지연처리 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공단 총괄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 총괄부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익일 보고로 접수되는 시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긴급 초동 대처의 신속성과 후속 조치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공단 간 정보 전달 시차 및 소통 공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39]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개선 요구

제　　목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 제9조(일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따르면 일반민원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 민원의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의1(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접수된 민원의 유형과 처리기간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민원 처리기한이 일관되게 산정·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 산하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제출한 수감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단의 「민원처리규정」에서 민원 유형별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기간을 3일로 보는 등 공단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각 도서관별로 민원 처리기한에 대한 기준을 달리 인식하고 있어 민원 처리기한을 일관되게 산정·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민원처리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개정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공단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기한을 일관되게 산정·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개선] 민원 처리기한을 일관되게 산정·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40]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개선 요구

제　　목　**민원처리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서는 민원의 이송, 관계부서 간 협조, 처리기간의 연장, 민원의 보완·취하 및 반려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접수된 민원의 종류와 처리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부를 적정하게 작성·관리하고,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의 민원처리부 작성·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민원처리부에서는 민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2025년도 및 2026년도 민원처리부에서는 민원의 유형과 분야만 구분하고 일반민원·고충민원 및 일반민원 중 건의·질의·기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민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 민원별 처리기간 및 민원종류의 적정한 분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민원처리부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관계부서 협조, 보완・취하・반려 및 반복(중복)・다수인 민원 여부 등 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민원처리부의 관리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에서는 매월 민원분석 및 민원관리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단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전자민원을 중심으로 분석・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 접수되는 비전자(문서) 민원은 민원분석 및 민원처리부에 포함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민원처리대장상세’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 민원의 종류 및 세부 처리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등 민원처리부 작성 및 관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개선] 민원처리부의 관리항목을 보완하고, 전자・비전자 민원을 포함한 민원처리현황 및 처리절차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14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개선 요구

제　　목　**홈페이지 민원 처리방침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조 치 부 서　▤▤▤▤▤

내　　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원은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단 민원처리규정에서는 일반민원의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이 다시 제출된 경우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 처리방침 개정(안)」[▤▤▤▤▤-3716(2024.12.27.)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방침에서는 민원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민원 해당 부서 배정 후 3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현장확인, 사실관계 조사, 관련 법령·규정 검토 또는 관계부서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의 종류·성격 및 처리 난이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처리기한을 적용하고 있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함께 충분한 조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의 종류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직원의 응대와 관련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불친절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불친절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 불만과 고충민원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민원의 내용에 따라 고충민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민원 처리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개선] 민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른 처리기한 및 고충민원 분류·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민원 처리방침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